# 적립식예금약관

### 제1조 (적용범위)

- ① 적립식예금(이하 "이 예금" 이라 합니다.)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.
-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예금거래기본약관」의 규정을 적용합니다.

# 제2조 (지급시기)

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. 다만,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#### 제3조 (이자)

- ①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(이용자의 스마트폰에 설치하여 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전자적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'토스앱'을 말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)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금리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(이하 '원금'이라 합니다.) 에 더한 금액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.
- ② 고객이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만기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만기후금 리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③ 고객이 만기일 전 지급청구한 때에는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가입일 당시 모바일앱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 리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, 이 예금 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금리를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금리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합니다.

# 제4조 (법령위반 시 처리)

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고객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,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고객에게 통보합니다.

※이 약관은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및 토스뱅크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

#### 부 칙

# 제1조(시행일)

이 약관은202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, 13층 | 고객센터 1661-7654 | 사업자번호 462-86-01671

